

한국과 일본의 사료가격안정제도



홍순찬
본회 기획조사부 부장

1. 한국의 사료가격안정제도

□ 배경

1972년 세계적인 대흉작에 따른 곡물파동 이후 1973년 3차례의 배합사료가격 인상(80.5%) 및 1975년 2차례의 가격인상으로 사료가격 안정화 필요.

□ 전담기구

당시 사료용 옥수수 수입전담 기구인 농협중앙회 內 『사료가격안정심의회』 설치

□ 기금재원

- 사료업체 납입금
- 기금운용 수익금
- 정부보조금 또는 융자금
- ※ 적립금의 대부분은 사료회사의 사료원료 수입에 따른 차입금으로 충당

□ 기금의 용도

사료도입자금의 융자, 사료구입가격과 공급가격과의 차액보전, 사료자원 개발 등

□ 사료업체 납입 및 보전 등

- 인정기준가격이 고시된 사료(옥수수, 수수, 소맥, 대용유)를 수입하는 자
- 기금납입 및 보전시기
 - 기금 납입 : 수입가격에 비해 기준가격이 높을 때(기준가격>수입가격)
 - 기금 보전 : 기준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이 높을 때(수입가격>기준가격)
- ※ 사료기업의 기금 납입금은 사료의 공급가격에 전가(원료가격 인하 시 인하폭의 일부만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가격인하 시기를 뒤로 미루어 시행)

□ 적립 및 사용실적

1975년부터 1983년까지 1,095억원을 적립하여 630억원을 사용하고 465억원의 잔액은 축산진흥기금에 편입시킴

□ 운영결과

사료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거출부담금 과다 등 부작용이 많아 무역시장 자율화, 저가구매 유도를 위하여 설치 운영 10년 만에 폐지.

2. 일본의 사료가격안정제도

□ 목적

배합사료 가격인상이 필요한 경우 가격차의 보전을 통해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경영 파급효과의 완화를 위해.

□ 기금운영의 이원화

- 민간주도의 “통상보전기금”과 정부 주도의 “이상보전기금”으로 이원화
- 민간주도의 “통상보전기금”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“이상보전기금”을 통해 “통상보전 기금”을 충당(보전)하는 시스템(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설치 운영)으로 운영

□ 기금 적립규모의 결정

- 정부(농림수산성) 일반회계에서 “이상보전기금” 적립규모 先 결정 후
- 정부의 “이상보전기금” 동액을 “통상보전기금”으로 3개 기금에서 출원·적립

□ 기금(이상·통상)별·주체별 적립금 분담

- 이상보전기금 : 정부출연 100%(총 안정기금의 50%)
- 통상보전기금 : 농가1/3, 기타 관련기관(전농 및 사료업체 등)이 2/3 적립
- 적립금의 결정 : 배합사료 평균공급가격의 4%(40/1000) 한도 이내

※ 농가의 경우 통상기금을 적립하고 필요시 보전금을 교구 받음(보험의 성격)

□ 기금별 발동요건 및 교부액 등

	발 동 요 건	교부 (보전)액
이상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당분기 평균수입원료가격이 기준 수입원료가격보다 15% 이상 상승하고 ▪ 통상보전액이 기준수입원료가격(해당분기 직전 1년간의 평균수입가격)의 15%를 초과할 때 	15% 초과 상승금액(예산규모 한도 내)
통상 보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당분기 배합사료가격이 해당분기 직전 1년간의 평균가격을 상회할 경우 ② 해당분기 생산자 부담액이 직전 분기의 104%를 초과하는 경우 	① 및 ②의 경우 그 초과분 전액(기금조성 규모의 범위내에 서조정)

※ 이상보전 발동요건 중 “수입원료가격의 기준”은 옥수수, 수수, 대두박, 보리, 소맥, 미강의 해당분기 직전 1년간 평균통관가격.

□ 운영현황 및 한계점

- 2006~2008년도 원료곡물의 급등으로 통상보전기금 2,671억엔, 이상보전기금 915억엔을 보전
- 통상보전기금 고갈로 2007년, 2008년도 말 잔액은 마이너스 적자 기록(2009년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약 1,100억엔 借入 - 2017년까지 기금을 적립해 상환해야 함)
- 2010년 국가부채 과다로 이상보전기금 국고부담 지원 중단
- 원료가격이 3분기 이상 지속 시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경영부실(마이너스 운영) 우려 ☒